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2.  
기획재정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7. 18., 조인철의원 등 15인

나. 회부일자: 2024. 7. 19.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2024.11.1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2024.11.15.) 상정

제2차 조세소위(2024.11.18.) 상정

제3차 조세소위(2024.11.19.) 상정

제4차 조세소위(2024.11.20.) 상정

제5차 조세소위(2024.11.21.) 상정

제6차 조세소위(2024.11.22.) 상정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소위(2025. 2.11.) 상정, 의결(수정안반영 폐기)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25. 2.18.)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 2. 제안설명의 요지

(조인철의원)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정부는 지난 '21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상향안을 발표하면서 2030년 전기차 420만대, 수소차 30만대 보급 목표를 수립했음. 이를 위해 미래차 3강전략 수립('22.9월), 미래차 분야 국가전략기술 지정('23.5월), 미래차법 제정('23.12월) 등 미래차 전환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그러나,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은 전체 차량 대비 2.3% 수준(누적기준, 약 60만대)에 불과하며, '24년 상반기 신차판매 기준으로 8.2%(약 6만7000대)로 본격적인 보급 활성화 궤도에 올랐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임. 더군다나, '24년 상반기 전기차 판매는 전년동기비 16.5% 감소, 수소차 판매는 전년동기비 38.7% 감소를 기록 중임.

이러한 상황에서 세제 혜택까지 일몰될 경우 미래차로의 산업 전환 지연 및 국내 자동차산업 발전 위축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에 부정적 영향 끼칠 우려가 매우 큼.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현행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9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검토보고서 참조

###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박수영)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522,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수정안(2024. 12. 10. 가결)에 그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함.

### 6. 찬반토론의 요지

생략

### 7. 심사결과

수정안반영폐기